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76호(號) 1927(昭和 2)년 8월 5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55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3(大正 12)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97호(號) 단동역[安東驛] 대조선선방면(對朝鮮線方面) 각(各) 역소(驛所)·항(港) 간(間) 발착화물(發著貨物) 취급방법(取扱方法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8월 15일 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수제(首題) 및 본문(本文) 중(中) 「조선선(朝鮮線)」을 「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」으로, 제1 중(中) 「회사(會社)」를 「철도(鐵道)」로, 제2 중(中) 「화물 운임 및 요금 규칙[貨物運賃及料金規則] 제23조(條)」를 「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68조(條)」로, 제3 중(中) 「화물 운임 및 요금 규칙[貨物運賃及料金規則 제24조(條)」를 「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69조(條)」로, 제4 중(中) 「화물운임 및 요금규칙[貨物運賃及料金規則] 제25조(條)」를 「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67조(條)」로, 제8 및 제9 중(中) 「만주선(滿洲線)」을 「만철선(滿鐵線)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제1 중(中) 「소화물급화물(小貨物扱貨物) 중(中) 1구(口)의 중량(重量) 5백근(斤) 또는 용적(容積) 30사이[才]를 초과(超過)한 것 및」 및 단서(但書)와 제5 및 제6을 삭제(削除)함.